#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

# 조례

[시행 2023. 7. 3.] [조례 제1741호, 2023. 7. 3., 일부개정] 대구광역시 달서구(어르신장애인과), 053-667-3595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「노인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3. 7. 3.)

- 1. "부모 등"이란 「민법」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.
- 2. "부양지원금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- 3. "부양자"란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를 말한다.
- 4. "장수노인"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- 5. "장수축하물품"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,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·정책·귀감·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부모 등 부양지원

제4조(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)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,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의 부양자로 한다.

제5조(부양지원금 지급기준) 부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,000원을 지급한다.

#### 제6조(부양지원금 신청 및 지급)

- ①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(이하 "동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·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양 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

- ③ 구청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다음 달 20일 전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한다.
- ④ 부양지원금은 신청한 해당 분기부터 지급하고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한다.
- 제7조(부양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 - 1.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
  - 2.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
  - 3.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,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.

## 제3장 장수축하물품 지급

제8조(지급대상)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

제9조(지급기준)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0,000원 상당하는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

## 제10조(지급신청)

-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, 부양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장수축하물품의 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11조(지급절차)

-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.

## 제12조(지급제외 등)

-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② 지급대상자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장수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3조(지급대상자 관리)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・비치하여야 한다.

# 제4장 보칙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# 부 칙 (개정 2023. 7. 3. 조례 제17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